

공공성이 강한 제3섹터 방식이 산업단지 개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올 초 입법예고했던 내용에서 건축사업 시행자 범위를 축소 조정, 공공기관으로 제한하는 내

용의 개정안을 지난 5월말 국회에 제출하면서 당초 입법예고안을 근거로 대구시 봉무지방산 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던 대구시에 불똥이 튀게 됐다.

‘민간업체 건축사업 제한’ 法 개정안 제출 건교부, 민자유치 제동?

대구 봉무산업단지 조성사업

대구시는 지난 1-2월 입법예고된 건설교통부의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 봉무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을 불었다. 시는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이 대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한 뒤 가능한 한 빨리 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건교부가 공공기관만 건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 단체의 민간자본 유치 어려움이나 산업단지 활성화의 시급성 등을 논리로 내세우며 입법예고안 대로 의결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마련된 이유는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김석준 의원이 7일 발의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용지 조성사업에

건축사업을 포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함께 민·관 합동법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교통부의 당초 입법 예고안과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나라 김석준 의원

민·관합동법인 포함

‘일부 개정법안’ 제출

지자체가 민간업체와 함께 건축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게 되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갖는 데다 사업의 연속성은 물론,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 또 궁극적으로는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효과까지 가져와 입주기업의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전망이다.

하지만 시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

을 경우 적잖은 문제점이 생긴다. 전체적인 사업규모나 일정에 당장은 큰 변동이 없겠지만, 일정 차질이나 계획 변경 등 일부 차질은 불가피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협약 대상이 아닌, 제3의 시행자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시 관계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 업체들의 불만 역시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의결되더라도 봉무단지 조성 일정이나 사업규모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조금 더 싼 값에 분양하고 하루라도 빨리 공단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업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35만5천960여평 규모로 조성되는 봉무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까지 기반시설비 4천억원과 주요 시설물 개발 8천500억원 등 총 1조2천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조성 면적의 45% 정도는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시설이 설치된다. 나머지는 산업단지와 외국인학교·전문상가·상업 및 주거시설 등이 들어선다.

잠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대구시가 봉무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공공기관만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일정 변경이나 비용 증가 등 각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봉무산업단지 예정지. 박진권기자 pajika@yeongnam.com

“봉무단지 민간사업자에 아파트사업권 준 건 불법”

대구시의회 김충환 부의장 “산지법 위반” 주장

대구시 동구 봉무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대구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으면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게 한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대구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김충환 부의장(북구·사진)은 7일 열린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봉무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지법)’에 근거해 진행

되는 것이며, 현행 산지법은 민간사업자에게 아파트분양 사업권을 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또 “대구시가 국회 등에 건의한 산지법 개정안에는 민간사업자에게 아파트분양 사업권을 줄 수 있도록 한다지만,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복잡한 상황이 생긴다. 법률 개정을 전제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면 이것 또한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봉무단지 조성 민간사업자에게 아파트분양 사업권을 줘 수익을 보장해주는 대신, 공장용지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만약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장용지를 싸게 분양하기 어렵게 된다. 또 민간사업자 역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상했던 수익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구시와의 분쟁이 예상된다.

한편 민간사업자에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산지법 개정안이 7일 김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에 의해 발의됐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를 제외하고 공공기관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석준 의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이 다르지만, 정부측과 협의해 민간사업자도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